

2026년도 제27회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2026년도 제27회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지적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확대(시험시간 연장)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추가 사항
지적장애인	시험시간	시험시간 1.5배 연장
	기타	별도시험실 배정

○ 응시편의 제공 증빙서류 추가 인정

- 시험시간 연장 신청을 위한 진단서 발급기관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외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
- 임신부 증빙서류로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 외 **담당 의사의 확인이 포함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추가 인정**

○ ARS 합격자 발표 서비스 종료

기존	변경
• 큐넷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60일간] • 자동안내전화(ARS): 1666-0100[4일간 유료]	⇒ • (유지) • 자동안내전화(ARS) 서비스 폐지

○ 응시수수료 사후 환불 사유 추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경찰·소방 및 공무원 등 수험자(시험전일 야간 비상근무자 포함)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신분증 인정 범위 확대: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추가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원서접수 기간	시행 지역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6. 10. 12.(월) 09:00 ~ 10. 16.(금) 18:00	서울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11. 14.(토)	12. 23.(수)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첫날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 13:00~18:00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다른 결제수단만 가능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전공선택과목 선택 사항 변경 불가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 과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2]

교 시	시 험 과 목	시험 방법
1교시	① 전공선택과목(택2) : 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전시기획론·문학사 [13개 과목]	주관식 (서술형)
2교시	② 박물관학 및 외국어*	객관식 (4지택일형)

*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나. 시험시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 수
1교시	① 전공선택과목(택2)	09:00	09:30 ~ 12:50 (200분)	4문항 (과목별 2문항) <주관식 서술형>
휴식시간 12:50 ~ 13:50 (60분)				
2교시	② 박물관학	13:50	14:20 ~ 15:00 (40분)	40문항 <객관식 4지>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해당사항 없음

4. 합격자 결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

○ 매 과목(외국어 과목은 제외)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5. 공인어학성적 제출을 통한 외국어 과목 대체

가. 외국어 과목 시험 대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2)

- 제27회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한 후, 공단에서 해당 성적의 진위여부 조회 후 외국어 과목 대체 처리

※ 외국어 성적 제출은 필수이며 수험자 중 해당 공인어학성적의 진위여부 조회 및 소명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성적임이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나. 인정 가능한 공인어학성적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

- 일반응시자

영어	TOEFL		TOEIC	TEPS	G-TELP (Level 2)	FLEX	TOSEL	
	PBT	IBT						
	490점 이상	58점 이상						625점 이상
불어	FLEX		DELTA, DALF		독어	FLEX		고테어학검정시험
	520점 이상		DELTA B1 이상			520점 이상		GZ B1 이상
일본어	FLEX	JPT	JLPT	중국어	FLEX		신HSK	
	520점 이상	510점 이상	N2 120점 이상		520점 이상		4급 194점 이상	
한문	한자능력검정 (한국어문화)		상공회의소 한자		스페인어	FLEX		DELE
	4급 이상		3급 이상			520점 이상		B1 이상
러시아어	FLEX		TORFL		이탈리아어	CILS		CELI
	520점 이상		기본단계 이상			B1 이상		Level 2 이상

- 청각장애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1호)

영어	TOEFL		TOEIC	TEPS	G-TELP (Level 2)	FLEX	TOSEL	
	PBT	IBT						
	440점 이상	43점 이상						
			312점 이상	168점 이상	34점 이상	312점 이상	Advanced 272점 이상	
불어	FLEX		DELF, DALF		독어	FLEX		고테어학검정시험
	312점 이상		-			312점 이상		
일본어	FLEX		JPT		중국어	FLEX		신HSK
	312점 이상		255점 이상			312점 이상		
한문	한자능력검정 (한국어문화)		상공회의소 한자		스페인어	FLEX		DELE
	-		-			312점 이상		
러시아어	FLEX		TORFL		이탈리아어	CILS		CELI
	312점 이상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청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 위 기준·점수를 적용

○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

- 시험예정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026. 10. 16.)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대해서만 인정
- 단, 어학성적의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대통령령」 제34364호, '24.4.27시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4월 27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공단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 가능
(ex.유효기간이 2년인 성적의 경우, 2022년 4월 27일 이전에 실시된 성적은 인정 불가)
- ※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 등 공단 외 타 기관으로 제출등록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 단,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한자의 경우 상시시험으로 어학성적 인정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의 경우 국내 어학시험 기관에서 국외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정(단, TOEIC, JPT 시험은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의 성적만 인정)
-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 JPT 성적의 경우 [별지 제2호] 성적확인동의서 제출
- ※ 국외취득 JLPT 성적의 경우 성적증명서 제출
- 어학시험은 단일 회차의 성적표만 인정되며, 응시 회차별 각 파트의 최고점이 조합된 성적표는 인정 불가(예: TOEFL의 My Best Score 등은 불인정)

다. 공인어학성적 제출 방법

- ❖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 시 시험성적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함
- ❖ 어학성적 신청서류 오류 및 서류보완으로 인한 시간 소요,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진위확인 시간 소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유효기간 경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
- ❖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기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기 제출내역은 큐넷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승인된 성적 확인 가능)
- ❖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다른 기관에 등록된 자료(성적 등)는 인정되지 않음

< 공인어학성적 사전등록·제출 방법 >

- (국내시행 TOEIC, G-TELP, TEPS 및 JPT) ‘큐넷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24시간 상시 제출·다이렉트 인정(등록) 가능
- ※ 청각장애인 등 별도 성적기준을 적용받는 수험자는 다이렉트 제출이 불가하고 원서접수 시 직접 성적을 입력하여 제출 또는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여 사전 등록 신청하여야 함

< 공인어학성적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 >

- 큐넷 메뉴 :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 →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 하단의 공인어학성적 제출하기 → 시험종류 선택 및 생년월일 입력 → 어학성적 조회하기 → **어학기관 로그인 후 본인성적 리스트 중 원하는 어학성적 선택** → 점수 및 입력 확인 후 하단의 제출하기 → 자동승인 후 승인된 어학성적 확인
- 승인 내역은 큐넷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 (그 외 어학시험)

구 분	내 용										
제출 시한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학시험 시행기관 진위확인 불가하므로 제출 시한을 준수하여야 진위 여부 조회의뢰 및 조회결과 회신문 수령 가능										
제출 기간	• 매월 초 1일부터 10일 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 어학시험 시행기관에 진위 여부 조회 의뢰하여, 진위가 확인된 성적은 매월 말 전산일괄 승인예정										
제출 서류	• 어학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 - <u>일본취득 TOEIC, JPT 성적</u>의 경우는 성적표 원본 및 성적확인동의서 [별지 제2호] 제출										
제 출 처	<table><tr><th>기관명</th><th>주 소</th><th>우편번호</th><th>담당 부서</th><th>연락처</th></tr><tr><td>서울지역본부</td><td>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td><td>02512</td><td>전문자격시험부</td><td>02-2137-0558</td></tr></table>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담당 부서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58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담당 부서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58							

< 원서접수 시 공인어학성적 제출 방법 >

구 분	사전등록자*	사전 미등록자
국내시행 TOEIC, G-TELP, TEPS, JPT	원서접수시 추가 제출 불필요	원서접수시 온라인 다이렉트 서비스로 제출(자동승인)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그 외 어학시험		원서접수시 해당 어학시험 점수, 응시일자 등을 입력하여 접수 하고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착오 기재 시 성적표 원본 제출 등 소명 필요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은 제출 불가

- * 취득한 성적의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에 기재출(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된 자
- ※ 사전등록·제출을 통해 기승인된 어학성적 내역으로 접수하였더라도 본 공고에 명시된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 성적일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기준에 맞는 성적을 새로 입력하여 접수하여야 함
- ※ 응시원서 접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여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원서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한 공인어학성적이 인정(승인)된 것은 아님
- (국내시행 TOEIC, G-TELP, TEPS 및 JPT) ‘큐넷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 활용하여 성적 제출(자동승인) 후 접수
- ※ 청각장애인 등 별도 성적기준을 적용받는 수험자는 다이렉트 제출이 불가하고 원서접수 시 직접 성적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 (그 외 어학시험) 국내시행 TOEIC, G-TELP, TEPS, JPT 외의 공인어학성적은 원서접수 시 어학성적 입력 화면에서 요구하는 응시일자, 점수 등의 사항을 정확히 입력
- 수험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시행기관에 진위여부 조회 예정
-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 JPT 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 동의서 스캔본 각 1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 제출(미제출시 진위조회 불가)
- ※ 국외취득 JLPT 성적의 경우 성적증명서 스캔본 1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 제출(미제출시 진위조회 불가)

라. 공인어학성적 진위여부 조회 및 미확인자(소명 대상자) 처리

- 해당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조회결과 진위여부 미확인자(소명 대상자)는 성적표 원본 등을 정해진 기일 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함

- 미확인자 명단 및 처리방법을 '26. 11. 9.(월), Q-Net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수험자가 해당 기간 내에 성적표 원본 등 공단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최종 진위여부 확인결과 유효하지 않은 성적임이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0점) 처리
- ※ 공인어학성적 정보의 오입력, 자체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12.(월) 09:00 ~ 10. 16.(금) 18:00 [5일간]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첫날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Q-Net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curator)에서 원서접수 하여야 하며,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완료 여부 확인

원서접수 참고사항

- 큐넷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rator>)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규격 증명사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300 X 4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수험자는 수험원서에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자격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 공단에서는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내방접수 수험자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다. 시행지역: 서울

기관명	담당 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02512	02-2137-0558

라.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30,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쿠팡계좌이체) 이용

※ 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 시간까지 미 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다른 결제 수단만 가능

마. 수수료 환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원서접수 취소로 인한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접수취소로 같음

○ 환불은 큐넷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구 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시험관리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시험 결시자
사후환불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경찰·소방 및 공무원 등 수험자(시험전일 야간 비상근무자 포함)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같은 시험 일자에 2개 이상의 자격으로 접수되어 한 자격을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험일시를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제외) - 수험원서를 접수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이외의 다른 광역지방 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시험장이 배정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시험장소를 사전에 고지하여 수험자가 선택한 경우는 제외) - 시험시설장비의 고장, 정전, 단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으로 시험시행을 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시험 관련 고지 오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착오에 대한 정정공지를 하였을 경우는 제외)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큐넷 메인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사후환불신청에서 신청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사후환불 : Q-Net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관리] - [사후환불 신청]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가능하며, 수험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전자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전공선택과목 선택 사항 변경 불가(수험표 출력하여 과목 선택사항 확인)

7.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Q-Net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 [공지사항] - ‘국가전문자격시험 유형별 응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 참고
- 장애인 및 기타 응시편의 제공 요청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편의 제공 유형 및 요청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제출) 원서접수 기간 내 Q-Net-[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응시시험 편의제공사항 수정 및 확인]에서 증빙서류 업로드
- (우편 또는 방문제출)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 시행 기관(관할 지역본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해당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 당일 시험실 입실 완료 시간 전까지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 허용(임신부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아.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2.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 사항
3.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동영상) 실기시험	면접시험	제출서류
시각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①, ②, 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 위원 사전고지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①, ②, 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 방법	- 확대 답안지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 위원 사전고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①, ②, 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 위원 사전고지	
지체장애	(1) 상지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①, ②, 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 위원 사전고지	
	(2) 상지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①, ②, 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 위원 사전고지-	
(3) 하지(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①, ②, ③호 중 하나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 위원 사전고지		
지체장애	(4) 복합장애 [상지 + 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①, ②, 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 위원 사전고지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동영상) 실기시험		면접시험	제출서류
청각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 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시험실 배정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 위원 사전고지	①,②,③호 중 하나
지적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①,②+④,③+④호 중 하나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신장, 심장, 정루, 요루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①,②,③호 중 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자	일시적 신체 장애	편의제공 사항 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 위원 사전고지		
	임신부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⑤호 중 하나

-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 두가지 이상의 장애유형을 동시에 가진 수험자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기준은 각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른 연장시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시간 산정 방법 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시각장애 경증 + 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 필기(답) 시험 적용 시)
 ⇒ 시각장애 경증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5}=90분]
 + 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에 부여한 시간[(60분*0.5)=30분] = 120분

※ 제출서류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1부. 다만, 지체장애인,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포함)과 상이처와 상이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 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부.
-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 의사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2.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 사항
3.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을 참조하여 제공 받고자 하는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임신부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의 소견서 1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담당 의사의 확인이 포함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054호)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상지+하지)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8.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신청기간

○ 2026. 11. 14.(토) 17:00 ~ 11. 20.(금) 18:00

※ 객관식 박물관학 과목을 대상으로 시험 종료 후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접수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Q-Net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같음

9.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안내

가.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2026. 12. 23.(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 [60일간]

나. 자격증 발급 및 교부

- 발급기관: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02-2077-9531, 9544)
 - 합격자의 경력증명 심의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수행
- 홈페이지: www.museum.go.kr [소식/참여-학예사 자격증 안내]

10. 수험자 유의사항

가. 공통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 작성, 위·변조, 기재 오기, 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 큐넷의 회원정보를 최신화하고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 알림 서비스 수신 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 축하 메시지 발송
- 2)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에 시험 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4)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 퇴실이 불가하며, 1교시(전공선택과목)에 한하여 시험시간 2시간(11:30 이후) 경과 후 화장실 출입이 가능합니다.**
(화장실 이용 후 재입실 가능)
 -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작성한 답항까지는 인정하며,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해당 교시 종료시 까지 시험본부 대기하여야 함
 -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 **무효(0점) 처리** 및 다음 교시(차수) 재입실·응시 불가
- 5) 결시자, 기권자, 답안카드 제출불응자 등은 당일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0점)처리**하고, 부정 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교시 시험 답안지 제출 불응자의 경우 2교시 시험 응시불가)

-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0점)**로 합니다.
-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손목시계, 탁상시계 등)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사용을 금함
 -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 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 숙지
-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 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통신·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스마트안경**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 휴대폰은 배터리 전원OFF(또는 배터리 분리)하여 감독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 11)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큐넷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합격자발표-가답안의견제시)
 - 14)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국가전문자격 시험 유형별 응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편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 15) 접수 취소 시 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6)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17) 인정신분증 범위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

- 국가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인정신분증 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국가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 아래의 인정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 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인정기준

①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인정

②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다만,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③ 아래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아래 인정신분증의 경우 ①,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정신분증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구분	발급처	모바일 신분증앱	삼성월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 스타뱅킹	농협은행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		○	○	○	○	○	○	○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		○	○	○	○	○	○	○
		③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	○	○	○	○	○
		④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공무원증 앱에서 확인(해당 앱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만 설치 가능)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신분증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정부24· PASS앱· KB스타뱅킹 국민지갑· 우리WON뱅크 원더월렛 등을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②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PASS앱 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모바일 국가기술 자격증(확인)	① 큐넷 전자지갑 및 모바일신분증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② 정부24·PASS·네이버·카카오·삼성월렛 등을 통해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된 국가기술자격증(상장형) ③ 네이버 자격증 서비스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								
	실물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서관·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구)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초·중·고등 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흑백,컬러)된 재학증명서(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재학증명서만 인정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대상자별 추가 인정 가능 신분증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및 모바일외국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앱, 삼성월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농협은행 앱에 발급된 것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 ①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 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②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해야 함(단, 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 전자파일을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NEIS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
 ○ NEIS 및 정부24에서 발행되지 않은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2025년 7월 19일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나. 주관식 시험(1교시)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식 답안지 견본 : [Q-Net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 - [자료실] - [기타자료]
-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객관식 시험(2교시)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배부된 문제지의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 문제지의 문제 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4지 택일형)
-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 마킹 등)로 판독 불능, 중복 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 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단의 첫 번째 약속은 청렴입니다.

【별지 제1호】 어학시험 성적표 제출신청서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어학시험 성적표 제출신청서			
1. 수험자 서약사항			
본인은 어학시험성적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이 제출서 및 붙임자료(영어시험 성적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3. 어학시험관련 내용			
시험종류		언어	
수험번호		취득점수	
시험일자	. .		
4. 제출서류 내역			
제출서류	☐ 외국어시험성적표 ☐ 성적확인동의서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의 외국어과목 합격을 위하여 위와 같이 다른 시험기관에서 취득한 시험성적을 붙임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시험 성적표(원본) 등 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Authorization

I hereby authorize the (TOEIC / JPT) representative in Japan to confirm for the TOEIC Committee / ICF my (TOEIC / JPT) scores per the information below. On my request, the ICF may relay the scores to a third party.

First name: _____

Family 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Test site: _____

Test date: _____

Test application (admission) number: _____

Address on test application form: _____

Telephone number on test application form: _____

● (TOEIC / JPT) Score

Listening: _____

Reading: _____

Total: _____

Please confirm the above scores and report confirmation to:

Score Verification Team

98 Jongro, Jongno-gu, Seoul, Korea 03191

E-mail: check@toeic.co.kr

Telephone number: +82-2-2280-7292

Signature of candidate, as it appears on passport: _____

Date of Authorization: _____

Unless renewed, this Authorization will expire 90 days after the date above written, at which point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

Score Confirmation Request Form

I hereby authorize the TOEIC representative in Japan to confirm for the YBM / Korea TOEIC Committee my TOEIC scores per the information below. Upon my request, YBM / Korea TOEIC Committee may relay the scores to ABC Inc. (조회신청 기관명)

- Name: YAMADA TAROU (이름)
- Date of birth: 1995 / 01 / 01 (생년월일)
- Test date: 2020 / 01 / 01 (응시일자)
- Registration No.: 0500000-4 or 200001000000 (수험번호)
- Test site address: 1 Chome-104 Totsukamachi, Shinjuku City, Tokyo 169-8050, Japan (고사장 주소)
- Address on test registration form: 1 Marunouchi, Chiyoda City, Tokyo 111-2222, Japan (접수 시 기재한 본인 거주 주소)
- Phone No. on test registration form: 090-1111-2222 (접수 시 기재한 본인 전화번호)
- Test Score

TOEIC L&R test

Listening	<u>350</u>
Reading	<u>350</u>
Total	<u>700</u>

TOEIC S&W tests

Speaking	<u>140</u>
Level	<u>6</u>
Writing	<u>160</u>
Level	<u>7</u>

Please confirm the above scores and report confirmation to:

Score Verification Team

98 Jongro, Jongno-gu, Seoul, Korea 03191

E-mail: check@toeic.co.kr

Telephone number: +82-2-2280-7292

- Signature of candidate,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_____
(자필 서명 미작성 시 성적조회 불가)
- Date of Authorization: 2020 / 02 / 22
(작성일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Unless renewed, this Authorization will expire 90 days after the date above written, at which point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